



→ 심사(대략 14일 소요)
 → 3시간 이상 모두 인정된 경우 이수완료(이수증 출력)
 ※인정프로그램 3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1/1부터
 부족한 시간만큼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능

아. 지참물 : 신분증, 영양사면허증 사본(핸드폰 촬영본 가능), 보수교육 통보서, 필기구
 자. 문의처 : (사)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 033)251-7576

카. 기타사항 :

1) 교육인정여부

영양사 보수교육은 총 6시간이며, 집합교육 3시간, 온라인(또는 인정프로그램 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 3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거나, 인정프로그램 이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정프로그램은 붙임 참조)

2) 해당지역 교육이수

집합교육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를 참고)

3) 면제신청

[신청방법]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 → 면제 신청 클릭(증빙서류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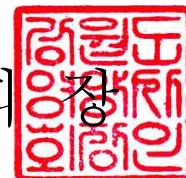
[신청대상]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 자

※면제 인정 사유(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① 출산, 육아휴직 등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기간 명시)
 - ② 질병 : 진단서 첨부 (기간 명시)
 - ③ 기타 : 장기해외 출장 등 (기간 명시)

- 붙임 1. 교육통보서 1부.
 2. 집합교육 일정표 및 장소 약도 1부.
 3. 인정프로그램 안내 1부.
 4. 관련 법조항 1부. 끝.

강 원 도 영 양 사 회



사무국장 **문명순**
 협조자

07/06
 회장 **이명규**

시행 강원도영양사회 - 081 (2015. 07. 06.) 접수 ()
 우 (200-938)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새마을금고중앙회 2층) / www.dietitian.or.kr
 전화 (033)251-7576 전송 (033)251-7579 / kda123@unitel.co.kr / 공개

붙임 1. 교육통보서

No. _____

보 수 교 육 통 보 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수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 07. 06.

사 단 법 인 대 한 영 양 사 협 회



교육명	영양사 보수교육		
기관명	교육 대상자	성 명	
		※영양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영양사 인적사항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고, 변경된 영양사 성명을 빈칸에 기재하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www.kdaedu.or.kr)에서 반드시 신청 ※사전신청을 하지 않고 참석할 경우 교육 이수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6시간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3시간(또는 인정프로그램 3시간))		
교육비	35,000원(집합교육 17,500원 + 온라인 교육 17,500원) ※ 인정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온라인 교육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 전화	033)251-7576
유의사항	1. 교육이수여부 : 총 6시간 이수해야함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또는 인정프로그램)3시간) 2. 면제신청 : 면제신청서를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미이수 처리됨. (※면제신청서는 2015년 보수교육 집합교육 전체 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만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에서 면제신청 접수) 3. 집합교육 지참물 : 주민등록증, 영양사면허증 사본, 보수교육 통보서, 필기구		

2)2차 강릉 :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

강릉캠퍼스 캠퍼스 지도



< 교육장 오시는 길 안내 >

1. 대중교통 이용 안내

<시내버스>

200번, 201번, 203번, 204번, 205번

2. 택시 이용 : 3분 정도 소요

3. 자가운전

강릉 IC ->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 금산 IC -> 강릉시내방향 -> 시청방향 -> 강릉교차로에서 양양, 속초 방향으로 1분

붙임 3. 인정프로그램 안내

교육종류	교육 구분	보수교육 인정시간
학술 프로그램	1. 주제별패키지 교육과정 수료 ¹⁾	1회 4시간
	2. 해외학회 참석 ²⁾	1회 2시간
	3.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학회의 학술프로그램	
	1) 전국영양사학술대회 2)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학회 ³⁾	1회 4시간 1회 2시간
논문	1.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게재 ⁴⁾	1회 2시간
	2. 전국영양사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⁵⁾	1회 1시간
교육자	1. 보수교육 강사 ⁶⁾	1회 2시간
	2. 주제별패키지 교육과정 강사 ⁷⁾	1회 2시간

※ 세부 내용

- 1) 주제별패키지 교육과정 : 대한영양사협회 주제별패키지 교육(12시간 교육과정)
- 2) 해외학회 참석

인정 해외학회	
1. ASPEN	6. AND
2. ESPEN	7. ADA(미국당뇨병학회)
3. ADA(미국영양사협회)	8. ICN
4. ACD	9. ACN
5. ICD	10. 일본영양개선학회

- 3)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학회

인정 학회	
1. 대한내분비학회	15.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2.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16. 한국임상영양학회
3. 대한당뇨병학회	17.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4. 대한병원협회	18. 한국식생활문화학회
5. 대한비만학회	19. 한국식품과학회
6.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 한국식품영양과학회
7. 대한신장학회	21. 한국식품영양학회
8. 대한심장재활협회	22.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9. 대한암예방학회	23. 한국식품조리과학회
10. 대한연하재활학회	24. 한국영양학회
11.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5. 한국외식경영학회
12. 대한중환자의학회	26. 한국운동영양학회
13.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7.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1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8.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 4)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게재 논문 : 당해년도 2, 5, 8, 11월 학술지 게재 논문 (제1저자 및 공동저자)
- 5)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 포스터, 오랄 발표자 (제1저자)
- 6) 보수교육 강사 : 2015년 영양사 보수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강사
- 7) 주제별패키지 교육과정 강사 : 대한영양사협회 주제별 패키지 교육과정 강사

붙임 4. 관련 법조항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이하 “보건소·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